

사 용 인 감 계

사  
용  
인  
감

20 . . . . .

상 호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우편번호 :

주 소 :

대 표 자 :

법인등록번호 :

전화번호 :

FAX No. :

은 행 명 :

지 점 :

계좌번호 :

사 용 인 감 계

통  
장  
인  
감

## 대금지급 약정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목적물의 대금지급 및 기타 거래상 발생한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### 제 1 조 (적용범위)

-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대금채권 등 채권의 종류 및 금액에 상관없이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- ② 본 약정서는 대금 지불에 관련한 다른 약정서보다 우선 적용되며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래기본계약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### 제 2 조 (대금결제업무약정 및 통보)

-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\_\_\_\_\_은행에 수급사업자 명의로 하기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(이하 '전자 방식외담대'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  
→ 하나은행, 신한은행 : 동반성장론 / 기업은행: IBK 상생결제론
- ② 수급사업자는 전항의 전자방식외담대를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한다.
- ③ 수급사업자는 결제계좌 및 업체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조 (납품대금의 지급)

-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제조건에 의하여 전자방식외담대 거래로 지급한다.

#### 1) 대금결제일자

- ☞ 모든 금액 - 1 일 ~ 15 일까지 승인된 세금계산서 27 일 결제
- 16 일 ~ 말일까지 승인된 세금계산서 익월 12 일 결제

#### 2) 대금지급조건

- ☞ 500 만원 미만 - 결제일로부터 1 일 만기
- ☞ 500 만원 이상 - 마감일(15 일, 말일)로부터 43 일 만기
- 대기업 대금결제일로부터 90 일 만기

- ② 대금결제일(만기일포함)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에 결제(지급)한다.

-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 2 조 3 항의 통보를 받기 전, 종전의 통지사항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*제 4 조 (대금지급의 유예)**

- ① 수급사업자는 제 2 조에 따른 \_\_\_\_\_은행에 전자방식외담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유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②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불량일 있을 경우 원사업자는 완성품을 납입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한다.

**제 5 조 (약정의 기간)**

- ① 제 7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약정은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하여 그 기간 동안 유효하며, 거래기본계약이 갱신될 경우 그와 같이 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. 단, 거래기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기본계약에 기초한 개별계약에서 발생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본 약정서는 독립하여 유효하다.
- ② 양 당사자간에 거래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. 단, 약정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일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된다.

**제 6 조 (약정의 변경)**

이 약정은 상호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.

**제 7 조 (약정의 해지)**

- ①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당사자 일방은 서면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본 약정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상대방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이 되는 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 8 조 (관할법원)**

본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 9 조 (거래기본계약과의 관계)**

거래기본계약과 본 약정서의 내용이 해석상 충돌할 경우 본 약정서를 기준으로 해석한다.

본 약정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 . . .

(원사업자)

(수급사업자)
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 산단 5 길 77  
세메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태 경



(인)

법인인감

(인)

- 첨부서류 -

-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- 2. 법인(개인)인감 증명서
- 3. 결제계좌 통장 사본
- 4. 은행별 가입한 동반외담대 약정서